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84
----------	-------

발의연월일 : 2025. 11. 26.

발 의 자 : 복기왕 · 정태호 · 임호선

조계원 · 박홍배 · 이상식

최혁진 · 양부남 · 곽상언

김우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기반시설관리 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경제·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나목에 따른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제1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 성한다. 1. (생 략) 2. <u>민간위원: 기반시설의 유지관 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u>	제18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2. <u>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나목에 따른 사람이 포 함되어야 한다.</u> <u>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u> <u>나.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u>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